

OECD의 포괄적인 생산자책임(EPR) 프로그램

OECD 사무국은 1994년에 일본정부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지원을 받아 OECD 지역내에서 "포괄적인 생산자책임(EPR)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OECD 사무국은 1994년에 일본정부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지원을 받아 OECD 지역내에서 "포괄적인 생산자책임(EPR)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본고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환경부의 폐기물자원국에서 번역한 자료임을 미리 밝혀둔다.

<편집부>

1. 개 요

이 보고서는 1994년 10월에서 1995년 2월중순 사이에 7개국가 및 EC에서 실시된 약 70건의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EPR과 관련된 수많은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EPR 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보다 공개적인 의사전달은 갈등과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목표는 반드시 환경적 영향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완전한 지식하에서 설정되지는 않는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③ 일단 목적이 정해지면 개방시장체제내에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계의 공통목적이 된다. 그러나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 및 모든 이행단계에서의 경쟁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관하여 현저한 의견차이가 있다.

④ 산업계와 정부부문은 자발적 해결책의 개발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은 산업계주도의 해결책은 정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⑤ EPR은 정부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EPR의 성공에는 지방정부당국의 효과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당국들은 정책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설정 및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전문성과 정책이해관계에 적당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⑥ EPR은 다양한 업계구성원간 그리고 지방정부와 산업계간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킨다. 새로운 역할과 방향제설정의 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미래에 일정한 산업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첫해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는 ▲인터뷰 과정의 완성, ▲회원국과 인터뷰한 나라에 의해 제공된 자료의 분석 및 종합, ▲OECD 국가들에서 사용된 법적·행정적 접근방법의 요약보고서의 개발, 위에서 제시된 주제들의 지속적 개발, ▲회원국들이 자국내에서 EPR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도록 하는 분석적 틀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배경

OECD는 1994년에 OECD 지역내에서 EPR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프로젝트의 기금은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기부하였으며, 작업계획 및 스케줄은 1994년 회의에서 OECD WMPG와 PPCG에 의하여 각각 검토되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EPR 프로그램의 이행을 선택하

는 회원국이 자국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세계시장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예견된 환경보상(environment reward)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첫째의 주요 결과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OECD 지역내에서 개발되고 이행되어 온 법적·행정적 구조를 기술하는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개발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들을 조직화할 것이다. 회원국 정부와의 개별 접촉에 의해 제공된 자료, 그리고 현재 EPR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는 이행되고 있는 국가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해 획득된 정보가 이 보고서의 2가지 자료원이다.

이 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서 지금까지 수행된 인터뷰과정에서 발생한 주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1995년 3월 OECD 국제워샵의 초점인 폐기물 최소화는 EPR 프로그램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수립된 몇가지 목적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정책도구에 관련된 것이지 EPR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금까지 정부목적 달성에서의 효과성의 평가를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의 대부분의 논의는 포장폐기물, 전자스crap, 폐자동차, 그리고 워샵과정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EPR 정책에 직면해 있지 않은 참가자들의 이득을 위하여 폐기물 최소화에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EPR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3. EPR의 정의

포괄적인 생산자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이라는 용어는 제품에 의하



여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생산자 책임을 언급하기 위하여 OECD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프로젝트는 폐기물 단계에서 보통 도시 고품폐기물(즉, 가정폐기물 및 수월한 상업·사업일 light commercial & business concerns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폐기물)로서 수집되고 관리되는 제품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제품이용단계를 넘어서 생산자책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전된 개념으로 이것은 일부 OECD 정부에 의하여 녹색제품, 청정생산기술, 폐쇄된 물질이용순환의 개발을 증진시키고,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최소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전략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폐기물관리비용을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authorities)와 일반납세자(general taxpayer)로부터 제품제조자(product manufacturer), 판매자(distributor), 시장인(marketer), 그리고 개별적 소비자(consumer)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점차 오염자부담원칙(PPP)의 중요한 해석으로 비쳐진다.

일부 국가는 OECD에서 사용되는 EPR 용어를 생산자책임(Product Liability ; PL), 또는 생산자책임(Product Responsibility ; PR) 등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한다. 반면에 일부국가와 연구가들에서는 EPR이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된 정의는 이 용어의 다른 정의의 적절성이나 동일한 형태의 정책을 칭하는 다른 용어의 사용에 의문을 제기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수행된 연구범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EPR과 다른 폐기물 최소화정책 수단들과의 관계

EPR은 자발적 협정, 예치금제도, 제품부담금, 생산자 회수체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가장 잘 검토될 수 있다. EPR은 종종 제품부담금 및 예치금제도의 형태로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여러해동안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EPR 형태(이중 대부분은 아직도 운영중에 있다)와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EPR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주 단순화된 용어로, 제품부담금은 사용된 포장재의 형태 그리고 양에 대해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과된다(비록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예치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폐기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또한 재활용에, 적당한 물질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재생이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EPR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방법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것들은 정부정책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소비후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폐기물관리비용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지방정부와 납세자로부터 폐기물발생의 책임이 있는 산업분야와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재정적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책임의 부여는 폐기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 제공을 의도한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는 EPR 정책수립에서 EPR 체제가 이행되어 온 각각의 제품종류에 대한 수집 및 재활용 또는 재생이용 목표를 정하였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는 대개 명백하게 구체화된다. 목표달성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이지만, 생산자의 선택에 관한 제한과 실패의 결과가 규정된다.

이러한 새로운 EPR 방식의 목적으로 폐기물 예방, 재활용 및 재사이용의 증대, 매립수요 감소, 오염자 부담원칙과 일치하는 폐기물관리비용의 이전, 새로운 재활용기술 및 능력의 개발, 청정제품 및 생산의 개발, 보다 재활용가능한 제품의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에서 물질사용연결고리의 폐쇄 등이 표현되어 왔다.

5. EPR의 수행

EPR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들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제품부담금(product charges) 및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chemes)는 OECD 국가들의 광범위한 연구주제가 되었으며, OECD 모노그래프 No.82("포장폐기물에 대한 경제적 수단 적용 : 제품부담금과 예치금제도의 실제적 문제들", OECD/GD(93)194, 파리, 1993)에서 논의된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제품부담금과 예치금제도는 비록 플라스틱 쇼핑백(이탈리아), 소형 소비자 배터리(덴마크 및 스웨덴), 형광등과 타이어(오스트리아)등과 같은 한정된 제품종류에서도 이행되어 왔지만, 주로 음료용기에 초점을 두어 왔다.

환경적으로 덜친화적인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물질이용에 관한 보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선택을 촉진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일치된 틀이 없기 때문에 물질들에 얼마간 부과시켜야 한다는데 관하여 현저한 의견차이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제품부담금은 가장 바람직한 물질로 만든 제품(이론적으로 제외되어야 하거나 아주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폐기물이 되고 폐기물관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많은 정부들은 재이용 그리고 확실한 물질종류에 대한 재활용 및 재사이용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치금제도를 이행하여 왔다.

처리요금 인상(advance disposal fees)도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단지 생산자가 지불하여 정부기금이 되는 요금으로서 환경프로그램의 이행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는 요금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다른 대안은 인상된 처리요금이 정부기금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품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소비자가 제품주기의 최종단계에서 반환금을 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치금제도와 아주 유사하지만, 대개 냉장고(오스트리아), 자동차(스웨덴)등과 같이 보다 긴 생애주기를 가진 제품에 대하여 이행된다. 또한 반환금으로 제공된 금액은 소비자가 바람직한 관리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최초로 지불된 요금과 다르다.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s)은 EPR의 이행을 위한 또하나의 수단이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자발적 협정의 사용은 산업의 배출량으로 인한 영향을 제한하고 잠정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이미 명령 및 통제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켜온 많은 국가들에서 선호하는 정책수단이 되었다.

자발적 협정은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산업을 제품에 관련된 제품특성과 폐기물관리문제에 기초한 환경영향의 감소방향으로 지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포장재를 감소시키고 제품주기의 최종단계에서 재활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독성물질의 점진적 제거 및 제품의 재설계는 자발적 협정하에서 자주 취하여져 온 행동의 예이다. 네덜란드의 계약체제는 이러한 방식의 가장 잘 알려진 예일 것이며, 일찍이 포장폐기물에 관한 자발적 협정을 낳았다.

정부정책목적이 제공되었고 산업계는 돈을 절약하였으며 아주 사려깊은 녹색 소비자들(green consumers)은 그들이 구입한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의 통합된 감소방향으로의 이동을 목격하였다. EPR의 가장 의욕적인 형태들은 자발적 협정의 기초에서 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는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의 견해에서 볼 때 자발적 협정의 가장 중요한 한계는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협정당사자와 비당사자간의 상대적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견해에서 볼 때 강제적인 명령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은 수집 및 재생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정부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강제 시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선호한다.

가장 의욕적이고 가장 최근의 EPR 프로그램은 제품회수(product take-back)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그렇게 단순하게 틀이 잡히지 않고, 특정한 제품종류에 대하여는, 단순화된 시나리오가 주어질 수 있다.

길고 공식적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행위자들과 관련될 수 있거나 주요한 행위자들과의 비공식적 자문에 한정될 수 있는 자문과정에 따라서, 정부는 문 제되는 제품의 수집 및 재생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별기업이 새로운 정책기준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형성한다. 이 결과 법률, 명령 또는 규정은 만약에 하나 또는 그이상의 다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개별기업이 회수 및 재생하여야 할 특정한 목표량 책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만약 하지 않는다면” 조항은 상황적 면제(conditional exemptions)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특정한 대안이 수행되는 한은 개인기업은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상황적 면제는 나라마다 그리고 명령마다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목표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체제가 고안되는 경우, ▲기업의 제품을 위하여 예치금제도가 고안되는 경우 등이다.

산업전반적 체제가 수용가능할 수 있게(요구조건에 따라야 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참여개방, 목표달성능력의 표시 등) 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만 하는 보다 더한 상황들이 있다. 최초 대안의 이용가능성 또는 2차적인 대안의 가능성이 실패하면, 개별기업은 특정한 요율로 자체 제품을 회수하고 재생(또는 재생을 위한 준비) 하여야만 한다.

비록 변화가 있어 왔지만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구조이다(예, 벨기에에서 환경세의 지불은 회사가 재생이용 체제에 참여함으로써만이 면제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회사수준의 제품회수 및 재생책임으로부터 제공된 상황적 면제중에서, 산업전반적 구조(industry-wide scheme)가 가장 자주 이행된다. (이러한 구조들은 독일의 Dual System Deutschland, 프랑스의 Eco-Emballages, 오스트리아의 Altstoff Recycling Austria,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벨기에의 FOST PLUS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EPR로서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산업면제체제”(industry exemption schemes)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6. EPR 프로그램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가?

EPR 프로그램의 개념은 많은 OECD 국가들에게 급속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 10개의 OECD 국가들은 정부공무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품종류에 대한 EPR을 부여하도록 명령, 규정 또는 다른 이행메

카니즘을 수립하는 권한을 제공하는 국가 또는 하위 국가 법률을 가지고 있다. 1975년 이후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권한들은 1986년이후에 수립되어 왔다. 3개의 다른 회원국가들은 이러한 권한을 채택할 것인지와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각국의 법체제내에서 현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다른 OECD국가는 지방정부와 사업계들이 이러한 국가적 법률의 초안작성에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최근 몇 년동안의 법률적 권한에 관한 활동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완성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 분야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넓은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각각 다른 이행단계에 있다. 몇몇 국가는 모든 포장재의 EPR을 이행하였으며 다양한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많은 나라는 음료용기와 일부 다른 제품에 한정된 초기형태의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왔다. 비교적 최근에 법률적 권한을 획득한 일부 국가들은 아직까지 권한을 국가적 조건으로 바꾸기 시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떠한 모델이 정책목표를 가장 잘 완수할 것인지, 어떠한 제품종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구상하고 있다.

국가들에 의하여 비교적 좁은 범위의 제품종류가 가까운 시기에 EPR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검토되고 있다. 포장재, 배터리(특히 소형 소비자 배터리), 전기 및 전자제품, 폐자동차등이 그것이다. 일부국가들도 건설 및 해체폐기물(construction & demolition wastes)과 같은 비가정 배출원 폐기물로 발생하는 제품을 고려하고 있다.

이 폐기물 최소화 워킹샵은 위에서 언급된 몇몇 폐기물에 초점을 두고 토론 패널을 한다. 각각의 폐기물은 제품주기 마지막 단계에서 적절한 처분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장재 외의 제품에 대한 "완전한 책임"(ful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의 이행경험은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이러한 제품과 그리고 다른 제품종류에 대한 EPR 분야에서의 주요한 발전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발전작업은 EPR 모델이 포장재외의 제품종류로 확대될 때에는 서로 다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다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들이 설계되고 이행될 때마다 정부는 EPR이 어떻게 전반적인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에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는 결정기준은 1991년 OECD에 의해 제시되었으며(OECD 위원회 권고규정 C(90)/177/FINAL, 1991. 1.31), 위에서 언급된 OECD Monograph No. 82에서 포장폐기물에 관하여 특히 고려되었다. 이 기준은 EPR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이 기준들을 요약하면,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명령 및 통제방식(또는 이 경우에는 세금 및 요금과 같은 경제적 수단)과 비교하여 경제적 수단의 범위 및 효과성, 형평성 및 분배효과, 행정적 실행가능성 및 비용, 제도적 틀과의 일치, 수용가능성, 이전관련 조정비용등이다.

결국, 정부는 하나의 전략이 국가의 환경정책들과 경제상황내에서 적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준이나 다른 기준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인터뷰 주요 주제

지난 몇 개월에 걸쳐, OECD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그리고 EC에 대하여 약 70건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인터뷰도 계획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에는 EC



공무원과 산업부 및 환경부를 포함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지방당국, 환경 NGO 구성원들, 산업연합 및 개인기업, 폐기물관리단체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몇가지 주요한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두가지 주요한 사항이 논의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 우리는 지금 EPR을 표현하고 이행하는 과정의 아주 초기단계에 있다. 몇 년동안 OECD 국가들이 주요한 부문에 걸쳐 이런 방향으로 정책발전을 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완전한 경제적 및 물리적 책임”(full economic & physical responsibility)의 이행에 관한 발전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인터뷰자들은 이와 같이 아주 다른 방식에 대하여 조정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험, 그리고 중간과정 개선의 불가피성 수용이 요구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였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열성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현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포장재 영역외에는 완전한 책임모델(full responsibility model)에 대한 실제 경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제품종류에 대하여 주요한 조치들이 취해져 왔으며, 미래에 많은 물질들을 분석하게 될 완전한 이행(full implementation)과 모의실험수준 시험(pilot level tests)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서로 다른 제품들은 서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완전한 책임시나리오를 관리하는 체제는 서로 반드시 달라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OECD는 대부분 포장재 분야에 대해서만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인터뷰에서 반복된 주요한 주제들의 6가지는 앞서 개요에서 밝혀두었다.

8. 앞으로의 OECD 프로젝트를 위한 조치

프로젝트의 첫해에 완성하여야 할 세가지 주요한 임무가 있다.

첫째, 인터뷰과정을 완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인터뷰에서 제기된 특수한 문제들에 관한 조사, 노력이 점진적으로 수행되어 온 몇몇 나라에서 인터뷰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 완전한 주기의 인터뷰를 하는 것 등이 수반될 것이다.

둘째, 인터뷰기간동안에 그리고 문서자료의 제출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종합 및 분석은 상당한 도전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PR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OECD 국가내에서 법적·행정적 구조를 기술하고 위의 주제들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어떻게 EPR 프로그램의 이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틀은 환경적 시각과 경제적 시각으로부터 선택적 접근방법(alternative approaches)의 비용과 잠재적 이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